#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99 발의연월일: 2021. 8. 18.

발 의 자:김형동·김영식·한무경

서일준 · 박덕흠 · 홍준표

이명수 · 정진석 · 전주혜

김승수 · 김은혜 · 최형두

박대수 · 양금희 의원

(14인)

## 제안이유

전통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바르게 다듬어진 지성과 성숙한 정신문화가 서려있는 공간임.

2019년 7월 제43차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나라의 9개 서원이 '한국의 서원'이란 이름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되었음. 이는 '한국의 서원'이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세 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임.

전통서원의 전적·고문서·목판·금석문·건축물 등과 교육 및 제향 의례·강학 전통 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서원이 가진 전통문화의 유산 및 문화적 자산이 보존·계 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이 법에 의해 등록된 것을 전통서원으로 정의함 (안 제2조).
- 나.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서원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전통서원발전위원회를 두고, 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우 서원 관계자,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전통서원 소재지의 시·군

- ·구에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바. 서원의 대표는 운영·관리 중인 서원을 전통서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서원이 속한 해당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서원의 지정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통서원의 계승·발전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고,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안제13조 및 안 제14조).

#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통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서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 2. "서원의 대표"란 서원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서원의 보존· 발전·계승을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전통서 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전통서원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 3.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 강학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각종 의례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 4.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5.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전통서원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서원 관계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 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전통서원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서원발 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전통서원·전통문화·역사·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서원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지원

단을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운영,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2. 제11조에 따른 전통서원의 지정 및 제12조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시·도전통서원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전통서원발전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신청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시·도지사 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전통서원·전통문화·역사·문화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시·도지사는 시·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시·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협의체) ① 전통서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서원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우 서원 관계자,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협의체의 설치・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전통서원의 지정 및 등록) ① 서원의 대표는 운영·관리 중인 서원을 전통서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서원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 천서를 첨부(서원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에게 전통서원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서원
- 2.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서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서원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서원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서원의 대표와 서원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도 알려야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서원의 대표는 시·도지사에게 전통 서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서원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정해제와 등록말소) ① 시·도지사 또는 전통서원의 대표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서원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서원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서원의 대표는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통서원이 전통서원으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서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서원의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해당 전통서원의 대표 및 서원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전통서워의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서원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통서원의 계승・발전 방안과 교육 프 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연구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통서원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 명령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 하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 의 장 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